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공기업등의 임직원 임용결격사유 개선 등〉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61호,
제2200877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결격사유 적용대상 확대	4
2. 결격사유 추가 및 횡령·배임행위의 범위 변경	8
3. 당연퇴직 규정 정비	14
4. 결격사유 조회근거 마련	20
5. 벌금형 분리선고 근거 규정 마련	22
6. 성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26
7.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사건범위 확대	30
8.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인사청문회시 임명절차 간소화	35

I. 제안경위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10.
3. 회부연월일 : 2025. 3. 11.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10.
3. 회부연월일 : 2025. 3.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 나.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 다.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 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34조의2).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권익위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보완하여 지

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의2 신설).

다. 성폭력범죄 등 성비위에 관한 범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3조의6제5항).

라.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 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80조의2).

Ⅲ. 검토의견

1. 결격사유 적용대상 확대

개정안은 결격사유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고(안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직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제외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 ② (생략)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 -----제10조(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의3-----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 -----

현 행	개 정 안
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우 “공무원”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직원까지 확대하고 있음. 이는 공적 업무자로서 필요한 윤리성·도덕성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또한, 지방공기업의 경우 임원과 직원 모두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²⁾

한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임원에게만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직원에게는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민간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민간 단체적인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직원이라도 공적업무 수행에 일정한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과 같은 조 제4항³⁾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

2)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임원의 임명과 책임), 제12조(직원의 채용),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3(인사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직원의 결격사유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미만이라도, 100분의 25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0조(임원 결격사유 등)는 제2조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미만인 기관의 직원에게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3. (생략)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2. 결격사유 추가 및 횡령·배임행위의 범위 변경

개정안은 ① 현행 임원의 결격사유인 경영성과 부진, 법령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에 따른 해임 후 3년 미경과자 등의 사유에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결과 해임, 경영진단 결과 해임 후 3년 미경과자 등을 추가하고, ② 결격사유인 횡령·배임행위의 범위를 공공기관 재직 중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관련 행위로 변경하려는 것임(지자체 출자출연법 개정안 제10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제6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 ----- -----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우 “공무원”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 본다)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삭 제>

현 행	개 정 안
<u>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u>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30조제3항제1호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생략)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사람 (이 경우 “공무원”은 “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4. 제58조제4항·제5항, 제63조의 7제3항 또는 제78조의2제3항5)- ----- 5.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공단 의 임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 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비위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1) 결격사유 추가

현행법상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는 경영성과 부진, 법령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에 따른 해임 후 3년 미경과자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결과 해임,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해임 후 3년 미경과자도 포함시키고 있음.

현행법상 경영성과 부진, 법령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에 따른 해임 등이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으로 추가하려는 비위행위,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해임 등의 사유 역시 그 중대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현행의 결격사유 등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2) 결격사유인 횡령·배임행위의 범위 변경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모든 횡령·배임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방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시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변경하고 있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지방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시 관련된 횡령·배임범죄로 결격사유를 한정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무원 재직시 횡령·배임 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전력은 공적업무에 요구되는 윤리성·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사유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사유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재직 시 횡령·배임’⁶⁾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 시 횡령·배임’과 ‘공무원으로 재직 시 횡령·배임’ 등 두 가지 모두를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한다는 입장임.⁷⁾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그러나, 퇴직 지방 공무원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공무원으로 재직 시 횡령·배임’ 사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임원의 결격사유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의 횡령·배임행위 관련 결격사유 개정 논의와 더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당연퇴직 규정 정비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등의 사유를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 ----- -----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우 “공무원”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 본다)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신 설>	4. 제9조제4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30조제3항제1호-----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9)에-----제1항 각 호-----. ③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3. ----- -----사람 (이 경우 “공무원”은 “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 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4. 제58조제4항·제5항, 제63조의 7제3항 또는 제78조의2제3항 ¹⁰⁾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5. (생 략)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⑤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 또는----- ----- ---제1항 각 호----- -----. ③ ----- ----- -----제1항제3호----- ----- -----. ④·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공단 의 임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 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0)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함과 더불어 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윤리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당연퇴직 사유 변경사항]

	현행	개정안
임원	- 임명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 임명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직원	(없음)	-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판명된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당연퇴직 사유 변경사항]

	현행	개정안
임원	- 임명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 임명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직원	- 임용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판명된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4. 결격사유 조회근거 마련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1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출자·출연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참고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결격사유 제도 운용을 위해 이미
임직원에게 대한 범죄경력조회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¹¹⁾

1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5. 벌금형 분리선고 근거 규정 마련

개정안은 임용 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지자체 출자출연법 개정안 제10조의2,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제6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1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 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 -----임직원에게 「지 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 또 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¹³⁾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 원부터 적용한다.	

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임직원에게 「지방공무원 법」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 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 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 여 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공사·공단의 임직원부 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임용 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죄 중 직무관련 횡령·배임관
련 범죄(「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와 성폭력 관련 범죄(「지방
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임용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려는 것임.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
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에 규정된 범죄는 300만원 이상, 같은 법 제31조제6호의3의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됨.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8조14)에 따라서 경합범으로 판결받아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의 범죄행위로 어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이 어려워짐.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하여 선고하는 것은 결격사유 제도의 정확한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임.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횡령·배임관련 범죄와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서 다른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4)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분리선고 되는 범위가 직무관련 횡령·배임 범죄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횡령·배임범죄까지 포함되어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6. 성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범죄 유형에 따라 징계시효의 차등을 두어 i) 성비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장기인 10년, ii)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5년 iii)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3년의 징계시효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6제5항)¹⁵⁾.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 ④ (생략)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 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 -----.
<신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 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 른 성폭력범죄

15) 현행의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
는 5년,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3년의 징계시효로 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징계 요구 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제7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성비위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규정 현황에서는 104개 지방공기업 중 89개 기관(약 85.6%), 187개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159개 기관(약 85.0%)이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다수의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¹⁶⁾

16) 현재 지방공공기관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인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규정]

분류	징계 시효					
	합계	2년	3년	5년	10년	규정 없음
지방공기업	104	1	89	1	13	0
지방출자출연기관	187	1	159	2	23	2
계	291	2	248	3	36	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24. 7.)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이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성비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의 도과로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¹⁷⁾

이러한 상황에서 성비위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타 범죄보다 장기간인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은 ① 현재 국가·지방공무원¹⁸⁾과 공공기관 임직원¹⁹⁾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

17)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24. 7.

18)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19)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가 10년이라는 점, ②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2024. 7. 8.) 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성비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 고려시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30조(징계 시효)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 성매매·성폭력·성희롱의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7.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사건범위 확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사건의 조사나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함)가 개시·종료되었을 때, 해당사실과 결과를 그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보의무가 있는 사건의 범위를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통보사건의 범위를 직무와 관련된 사건 뿐만 아니라 성비위,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4조의2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제8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u>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u> ----- -----

현 행	개 정 안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u>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u>

현 행	개 정 안
<u>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1. 감사원 2.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u>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u> ----- -----.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나 조사를 개시할 때 그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아도 소속기관이 제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성비위 사건의 경우 소속기관이 뒤늦게 인지하여 성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으나, 소속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를 도과하여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것이 확인되었음²⁰⁾.

특히 지방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주운전 자진신고 제도’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제도’ 등 자체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등 상급기관에서 정한 기준·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많지 않은 실정이었음.²¹⁾²²⁾

20) 「지방공공기관 중대비위 ‘징계 사각지대’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4. 7. 17

21) 감사원도 기재부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관련 지침에 도입하도록 권고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감사보고서, ’24.1월)

22)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

[음주운전 자체점검 제도 운영 현황(권익위 실태조사 '24.5월)]

기관 구분	계	2가지 이상 운영	일부 운영			미운영
			소계	자진 신고	운전경력 증명서 확인	
지방공기업	104	16	18	4	14	70 (67.3%)
지방출자·출연기관	187	7	25	3	22	155 (82.9%)
합계	291	23	43	7	36	225 (77.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24. 7.)

이러한 문제점을 현행 제도내에서 보완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수사기관 등이 지방공공기관 종사자의 성비위 범죄, 음주운전 등의 사건에 대해서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지방공공기관 종사자 역시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임.²³⁾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최근 성비위·음주운전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고려시 수사통보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직 지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정 시행함('24.12.30.)

- 징계 누락·회피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자진신고제도* 또는 운전 경력 증명서 확인제도**를 실시토록 규정

*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시, 일정 기간 내에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

** 주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운전 사실 확인

23)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2024. 7.)을 통해 행정안전부에게 지방공공기관 수사통보대상을 확대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음.

8.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인사청문회시 임명절차 간소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나,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을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② ----- ----- ----- -----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²⁴⁾ 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4)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관장 임명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경우 해당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므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을 거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임. 또한, 지방공기업의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²⁵⁾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공개모집²⁶⁾을 통한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지연 방지 및 원활한 기관 운영 보장, 지방공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임명절차 간소화 근거규정 마련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25)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6) 공개모집 → 심사 →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문 의 처
02)6788-5333